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20. 6. 10 선고 2017가단12762 판결 [부당이득금반환]

---

## 전 문

**원고**A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B

**피고**C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세양

담당변호사 성승락

**변론 종결**2020. 5. 13.

**판결 선고**2020. 6. 10.

##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N

## 청 구 취 지

피고는 원고에게 75,110,440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3. 27.부터 이 사건 소장 부분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각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

## 이 유

###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소외 D과 뉴마티즈 E 차량에 대하여 D을 기명피보험자로 계약기간을 2014. 12. 24.부터 2015. 12. 24.까지로 정하여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제1보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한 보험자이고, 피고는 소외 F과 사이에 G 차량에 대하여 F을 기명피보험자로 하는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제2보험계약'이라 하고, 이 사건 제1보험계약과 통틀어 '이 사건 각 보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한 보험자이고, H은 D과 F의 아들이다.

나. 이 사건 각 보험계약에는 피보험자가 무보험자동차로 인하여 생긴 사고로 죽거나 상해를 입은 때 그로 인한 손해에 대하여 배상의무자가 있는 경우에 약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보상하여 주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상해담보특약(이하 '이 사건 특약'이라 한다)이 포함되어 있는데, 위 각 약관에는 이 사건 특약에 따라 원고, 피고에게 무보험자동차로 인한 상해에 대한 보상을 청구할 수 있는 '피보험자'의 범위에 기명피보험자의 자녀(피보험자동차에 탑승 중이었는지 여부를 불문함)를 포함하고 있다.

다. H은 소외 1이 운영하는 전문배달업체 'J'에서 일용직 음식배달기사로 근무하였는데, 배달 요청을 받고 고양시 일산서구 K에 있는 'L'로 가기 위하여 2015. 12. 7. 20:03경 고양시 일산서구 M에 있는 'N' 앞길에서 이륜차량을 운전하던 중, 맞은편에서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소외 0이 운전하던 차량(이하 '가해차량'이라 한다)이 중앙선을 침범하여 진행하여 오자 이를 피하려다가 이륜차량이 전도되어 두부손상 등의 상해를 입게 되었다(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라. 피고는 이 사건 사고에 대하여 2017. 6. 12.까지 H에게 가급금 및 치료비로 합계 151,906,020원을 지급하였고,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상해담보특약의 중복보험자인 원고로부터 분담금 75,110,440원을 지급받았다.

마. 한편, 이 사건 각 보험계약의 약관 제19조에서는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상해를 입은 경우라 할지라도 보험회사가 보상하여 주지 않는 사유를 나열하고 있는데, 동조 제9호에는 '피보험자가 피보험자동차가 아닌 자동차를 영리의 목적으로 요금이나 대가를 받고 운전하던 중 생긴 사고로 인한 손해'라고 기재되어 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 을 제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 2. 주장 및 판단

###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사고는 H이 피보험자동차가 아닌 이륜차량을 배달기사로서 임금을 받고 운전하다가 생긴 것으로 이 사건 각 보험계약의 약관 제19호 제9호에서 정한 면책사유(이하 '이 사건 면책특약'이라 한다)에 해당하여 원고와 피고가 H에게 보험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음에도, 피고가 H에게 보험금을 지급하고 원고로부터 분담금 75,110,440원을 받았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 75,110,440원 및 이에 대한 이자를 부당이득으로 반환하여야 한다.

## 나. 판단

1) 이 사건 특약의 성격 피보험자가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교통사고로 인하여 상해를 입었을 때에 그 손해에 대하여 배상할 의무자가 있는 경우 보험자가 약관에 정한 바에 따라 피보험자에게 그 손해를 보상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상해담보특약은 손해보험으로서의 성질과 함께 상해보험으로서의 성질도 갖고 있는 손해보험형 상해보험에 해당한다(대법원 2000. 2. 11. 선고 99다50699 판결 참조, 대법원 2003. 12. 26. 선고 2002다61958 판결 등 참조), 즉 이 사건 특약은 통상의 정액급부형 상해보험과 달리 실손해를 보상하는 방식으로 손해액산정을 대인배상 책임보험과 같이 약관상의 보험금 지급기준에 의하도록 하는 형태를 취하고 있어 손해보험의 성격도 가지고 있기는 하지만, 기본적으로는 신체에 상해가 발생한 손해를 보험사고로 하고 있다는 점에서 상해보험의 성격을 가진다고 보아야 한다.

### 2) 이 사건 면책특약의 효력 가) 관련 법리

상해보험 약관 중 "피보험자가 무면허운전을 하던 중 그 운전자가 상해를 입은 때에 생긴 손해는 보상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한 무면허운전 면책약관이 보험사고가 전체적으로 보아 고의로 평가되는 행위로 인한 경우뿐만 아니라 과실(중과실 포함)로 평가되는 행위로 인한 경우까지 보상하지 아니한다는 취지라면 과실로 평가되는 행위로 인한 사고에 관한 한 무효라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1998. 3. 27. 선고 97다27039 판결, 1996. 4. 26. 선고 96다4909 판결, 1990. 5. 25. 선고 89다카17591 판결, 대법원 1999. 2. 12. 선고 98다26910 판결 등 참조).

상해보험 약관 중 "피보험자가 음주운전을 하던 중 그 운전자가 상해를 입은 때에 생긴 손해는 보상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한 음주운전 면책약관이 보험사고가 전체적으로 보아 고의로 평가되는 행위로 인한 경우뿐만 아니라 과실(중과실 포함)로 평가되는 행위로 인한 경우까지 보상하지

아니한다는 취지라면 과실로 평가되는 행위로 인한 사고에 관한 한 무효라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1998. 3. 27. 선고 97다48753 판결 참조).

#### 나) 판단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특약은 상해보험의 성격을 가지는 것으로서 상법 제739조, 제732조의2, 제663조의 적용을 받으므로, 보험회사는 보험사고가 피보험자의 과실(중과실 포함)로 발생한 경우에는 피보험자에 대한 보험금 지급의무를 면하지 못한다. 이 사건 특약이 정한 면책사유 중 하나인 이 사건 면책특약은 '피보험자가 피보험자동차가 아닌 자동차를 영리의 목적으로 요금이나 대가를 받고 운전하던 중 생긴 사고로 인한 손해'라고 규정하고 있어 그 사고가 피보험자의 고의로 인한 것인지, 과실로 인한 것인지를 전혀 구분하지 않고 있는데, 위 법리에 비추어 보면 피보험자가 무면허운전 또는 음주운전 중에 사고가 발생한 경우와 마찬가지로, 피보험자가 영리의 목적으로 피보험자동차가 아닌 자동차를 운전한 경우에는 피보험자의 과실로 평가되는 행위로 인하여 사고가 발생한 경우라 하더라도 보험회사가 면책된다는 취지라면 그 범위 내에서는 이 사건 면책특약이 무효라고 보아야 한다.

앞서 인정한 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사고는 H이 피보험자동차가 아닌 이륜차량을 영리의 목적으로 운전한 경우에는 해당하지만 맞은편에서 가해차량이 중앙선을 침범하여 진행하는 것을 발견하고 이를 피하려다가 발생한 것인바, H이 고의로 이 사건 사고를 발생시켰다고 보이지는 않으며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이 사건 면책특약이 이 사건 사고에 대하여도 원고 내지 피고를 면책시키는 취지라면 그 범위에서 무효라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보험회사인 원고 내지 피고는 이 사건 면책특약이 유효함을 이유로 하여 H에 대한 보험금 지급의무를 면하지 못하는 것이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원고는, 피고가 위 돈을 반환하기로 약정하였다고도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도 이유 없다.

###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송효섭**